의안번호	2205111
의 뢰 인	신영대의원
회 답 일	2024.11.6.
추계번호	24E469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중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6조의 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%에서 100%로 상향조정 –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(지역화폐사용분)에 대하여 100%의 소득공제율 적용	조세지출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항목 중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,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중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 수, 이들 개개인의 연간 총급여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상세정보 필요

○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%에서 100%로 상향조정 시 소득공제금액 증가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하여 기본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만,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에 사용 시 40%의 소득공제율 적용

○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추가 또는 공제율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의 총급여규모별 기본공제 한도,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공제대상금액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(기본공제 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및 도서·공연비 등 공제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)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개인별 총급여액, 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분,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에 대한 자료 필요

❑ 그러나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○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를 총급여규모별(13개 소득구간)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공제항목별(대중교통, 전통시장, 도서·공연 등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등, 신용카드) 사용분을 집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

○ 그러나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중 실제 사용된 금액, 대중교통·전통시장·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해당 자료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추정 곤란

❑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요, 2024년 기준

제도	항목	공제제도
소득공제율	· 신용카드 ·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·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 관람료('도서 등') 사용분 · 전통시장 사용분 · 대중교통 사용분 ·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[1]	15% 30% 30% 40% 40% 10%
소득공제 한도	· (기본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· (기본) 총급여 7천만원 초과 · (추가) '도서 등', '전통시장', '대중교통' 사용분 ·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[1]	3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추가 (*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) 100만원
일몰 기한		2025.12.31.

주: 1) 2024년에 한하여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(공제한도 100만원)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